

# 서울연구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노동 정책 관련 조사·연구 협력 업무협약서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 운동과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 기관의 발전과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MOU, 이하 '본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 운동과 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상호 협력함으로써 연구원은 시민참여에 기반한 현장성과 정책의 활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연구소는 다양한 인적·조직적 네트워크 실행 역량과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력 범위]

1. 서울시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동 운동과 정책 과제 발굴 및 조사·연구 수행
2. 노동 운동과 정책 관련 학술행사(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3. 양 기관이 생산한 관련 정보의 교환 및 교류 협력
4.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 사업

## 제3조 [협력 추진방법]

1.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제2조에 명시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본 협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효력발생, 협약기간]**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의 갱신을 원할 경우 협약 종료 1개월 전 기간 연장 및 수정사항을 논의하여 연장한다.

**제5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 연구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

1.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협의에 따르기로 한다.
2. 협약의 증빙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후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대표는 본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2016년 1월 15일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원장 김수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69-9

국민서관빌딩 502호

**이사장 이원보**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서울연구원 서울시 노동 정책 관련 조사·연구 협력 업무협약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와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 운동과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 기관의 발전과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MOU, 이하 '본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 운동과 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상호 협력함으로써 연구원은 시민참여에 기반한 현장성과 정책의 활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연구소는 다양한 인적·조직적 네트워크 실행 역량과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력 범위]

1. 서울시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동 운동과 정책 과제 발굴 및 조사·연구 수행
2. 노동 운동과 정책 관련 학술행사(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3. 양 기관이 생산한 관련 정보의 교환 및 교류 협력
4.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 사업

## 제3조 [협력 추진방법]

1.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제2조에 명시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본 협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효력발생, 협약기간]**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의 갱신을 원할 경우 협약 종료 1개월 전 기간 연장 및 수정사항을 논의하여 연장한다.

**제5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 연구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

1.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협의에 따르기로 한다.
2. 협약의 증빙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후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대표는 본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2016년 1월 1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69-9

국민서관빌딩 502호

**이사장 이원보**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원장 김수현**